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은영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2851

발의연월일 : 2026. 8. 19.
발의의원 : 김은영 의원,
전홍배 의원, 이상봉 의원

1. 제안이유

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한 치안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, 순찰차 미주차 시간대 일반 차량 주차를 허용하는 등 탄력적 운영을 통해 주민의 주차 편의와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법령 약칭 및 자구 정비(안 제1조, 안 제11조, 안 제16조, 안 제18조)

나.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등 신설(안 제11조의2)

3. 개정 조례안 : “붙임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비용추계서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(붙임)

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시행규칙”을 “같은 법 시행규칙”으로 한다.

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”를 “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 제4조제1항제8호”로 한다.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등) ① 군수는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. 이 경우 “순찰차”란 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, 교통단속 및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상시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.

②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에는 순찰차가 주차되도록 하여야 하며, 군수는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구획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순찰차가 주차되지 않는 시간대에 순찰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다.

③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에는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고,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.

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운영 등 상황을 점검하여 그 주차구획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.

⑤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표지판의 내용 및 규격 등은 별표 제3의2에 따른다.

제16조 중 “법 시행규칙”을 “시행규칙”으로 한다.

제18조 중 “법 시행규칙”을 “시행규칙”으로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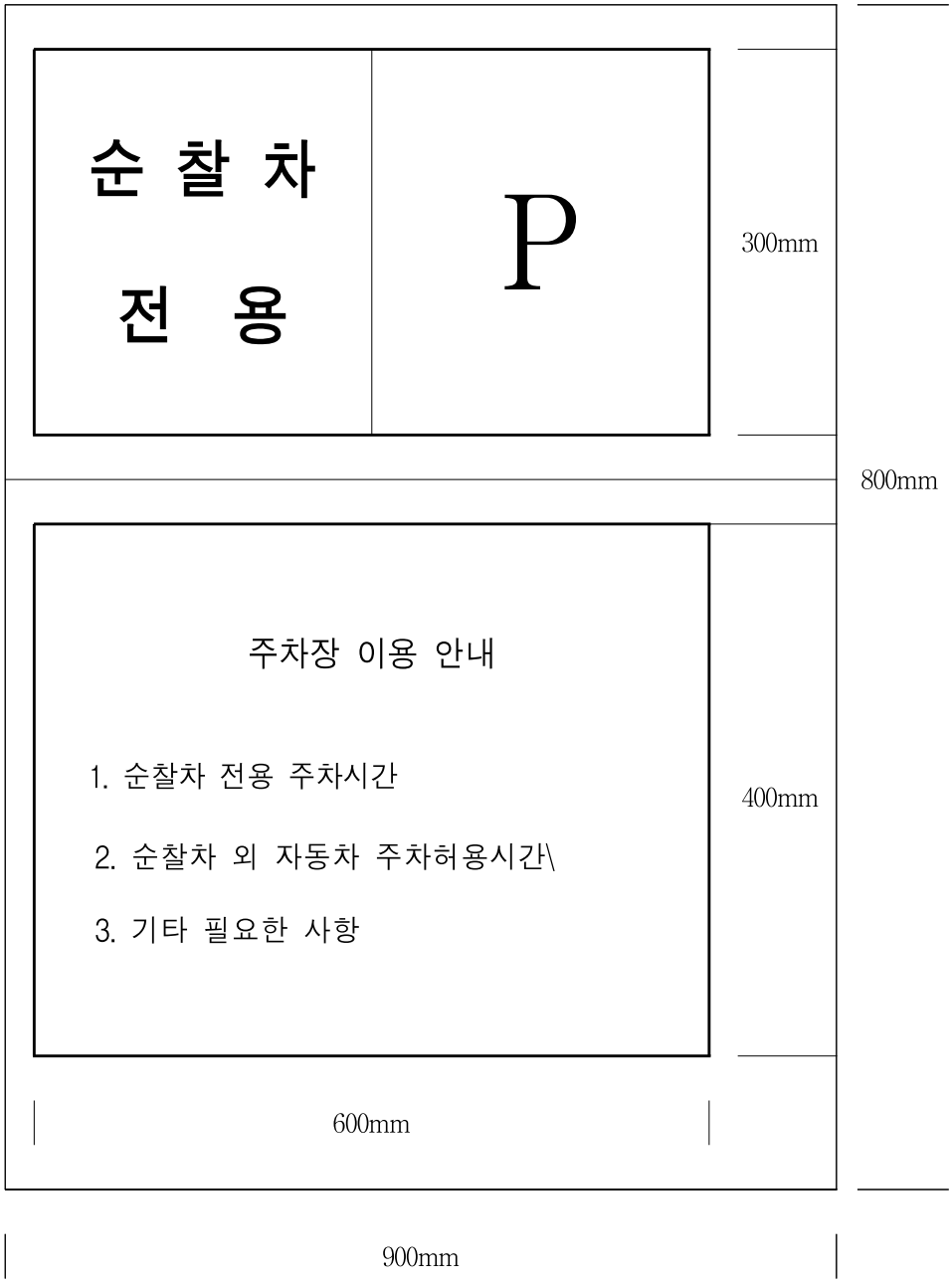
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의2]

순찰차 전용주차구획 표지판(제11조의2제3항 및 제5항 관련)



◦ 재　　료 : 알미늄, 아크릴
◦ 테　　 : 백색
◦ 바　　탕 : 청색
◦ 문　　자 : 흰색, 고딕체
◦ 문　　안 : 순찰차 전용
◦ 설치위치 : 주차장 이용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2m이상의 지주에 설치하여야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주차장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**제1조(목적)** ---------- 같은 법 시행규칙----------.
제11조(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등)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.	**제11조(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등)**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(이하 "시행규칙"이라 한다) 제4조제1항제8호----------.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**제11조의2(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등)** ① 군수는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. 이 경우 "순찰차"란 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, 교통단속 및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상시 사용되는 자동차를

	말한다. ②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에는 순찰차가 주차되도록 하여야 하며, 군수는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구획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순찰차가 주차되지 않는 시간대에 순찰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다. ③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에는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고,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.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운영 등 상황을 점검하여 그 주차구획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. ⑤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표지판의 내용 및 규격 등은 별표 제3의2에 따른다.
제16조(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등) 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노외주차장	**제16조(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등)** 시행규칙----------

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.	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제18조(부대시설의 종류 등)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, 제2종 근린생활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, 운동시설, 업무시설, 자동차관련시설로 하며, 주차장 총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40 이내로 한다.	**제18조(부대시설의 종류 등)** 시행규칙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.

참고 **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**

□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(2026.3.31. 일부개정·시행)

제6조의2(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)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6. 7. 27.>

1.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
2.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으로서 인근 이용자의 화물자동차를 위한 경우
3.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
4.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
5.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

②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전용주차구획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용주차구획에 주차가 허용되는 자동차(이하 이 항에서 "전용주차자동차"라 한다)가 주차되지 않는 시간대에 전용주차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다. <신설 2021. 4. 16.>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(2025.4.30. 전부개정·시행)

제10조(주차장의 표지)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장 표지는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 중 주차장 표지에 따른다.

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별표 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, 이 경우 표지상단에 달성군의 문장을 표시하여야 한다.

1. 주차요금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
2.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

3. 주차장의 이용시간

4.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의 주의사항

참고 **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**

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관내 노상주차장에 범죄수사, 교통단속 및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'순찰차 전용주차구획'을 설치 시 식별이 용이한 '표지판 및 보조시설물'을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(안 제11조의2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(제3조제2항제1호·제2호)

3. 미첨부 사유

- 관내에 이미 설치되어 운영 중인 기존 노상주차장 공간을 다각도로 연계·활용하고 일부 구획의 도색 및 표지판 설치 등 소액의 가변형 시설물 설치 위주로 조례 시행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재정 부담은 지극히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.
- 향후 관내 노상주차장별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구체적인 설치 구역 지정, 운영 시간대 설정, 효율적인 운영 상황 점검 및 지정 해지 등 세부적인 집행계획은 주관 부서의 행정적 판단과 수요에 따라 가변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비용을 산출에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음.
- 본 조례안은 달성군 내 긴급 경찰업무 수행 차량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고, 가변적 운영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 안녕 및 주민 안전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- 따라서 본 조례안의 시행에 예상되는 비용은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예상됨.

작 성 자			
소 속 및 직 위	달 성 군 의 회 의 원	성 명 (연 락 처)	김 은 영 (☎ 2292)